<u>개발행위허가기준</u>(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
	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
	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
	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
	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
	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나 도시 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관리계획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	
계획사업	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L	

과의 관계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
	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
	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
	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
	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
	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
	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사항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 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

꾸기 · 다지기 · 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 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 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 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 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 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 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 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안에 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 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 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것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 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라) <삭제>
-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 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마. 물건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쌓아놓는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행위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 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 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용도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
	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
	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

	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도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
	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